군포도시공사 제6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」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

2020년 6월 12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54호

군포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

군포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제1항의 4호) 중 "직책급업무추진비"를 "직책급업무수행경비"로 한다.

[별표 1] 의 항목란 중 "직책급업무추진비"를 "직책급업무수행경비"로 한다.

[별표 1] 의 직책급업무추진비란 중 "사장 : 500,000원"을 "사장 : 600,000원"으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하되, 2020년 5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소 관 부 서		경영기획부
입안자	직 위 성 명	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이 태 권 (390-7615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복리후생비 지급) ① <생략> 1. ~ 3. <생략> **4. 직책급업무추진비** 5. <생략> ② <생략>	**제6조(복리후생비 지급)** ① <현행과 같음> 1. ~ 3. <현행과 같음> **4. 직책급업무수행경비** 5. <현행과 같음> ② <현행과 같음>

현 행

[별표 1]

복리후생비 지급기준(제6조 관련)

항 목	지급대상	지 급 기 준	지 급 일
직 책 급 업무추진비	임직원	· 사장 : 500,000원 · 본부장 : 450,000원 · 3급, 4급 부 · 팀장 : 400,000원 · 5급, 기능1급 부 · 팀장 : 350,000원	매월 급여일 지급
* 정직·직위해제 또는 휴직(업무상 질병휴직은 제외)중에 있는 자는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월중에 정직 · 직위해제 ·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또한, 월중에 신규임용 또는 퇴직, 면직 등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			

개정안

[별표 1]

복리후생비 지급기준(제6조 관련)

항 목	지급대상	지 급 기 준	지 급 일
직 책 급 업무수행경비	임직원	· 사장 : 600,000원 · 본부장 : 450,000원 · 3급, 4급 부 · 팀장 : 400,000원 · 5급, 기능1급 부 · 팀장 : 350,000원	매월 급여일 지급
* 정직·직위해제 또는 휴직(업무상 질병휴직은 제외)중에 있는 자는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월중에 정직 · 직위해제 ·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또한, 월중에 신규임용 또는 퇴직, 면직 등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			